

3) 사업자등록 절차

홈스쿨은 면세사업자로 인정받아 수입의 10%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. 만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 적발되면 10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벌금(가산세)까지 내야하므로 교육청에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자로 등록 한 후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바란다.

▶ 신청방법 :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스쿨 오픈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홈스쿨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. 홈스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.

▶ 구비 서류 :

-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(세무서에 비치,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)
- 주민등록증 사본 1부
- 교육청 신고필증 1부
- 임대차 계약서 1부 (월세나 전세 계약을 했을 때 필요, 본인 소유의 집이라면 필요치 않다.)

▶ 처리과정 :

접수 -> 서류검토 -> 결재 -> 신고필증 교부

▶ 홈스쿨 사업자등록 기준 :

홈스쿨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된다.

▶ 유의사항 :

- 집에서 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자(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3)로 신청하면 되고, 장소를 따로 얻어 홈스쿨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준사설강습소(기준경비율 코드번호 809007)로 신청하면 된다.
-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홈스쿨 창업에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을 챙겨두어야 한다.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경비로 처리 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다.
-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. (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.)
-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. 수입에 맞게 적정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.

▶ 사업자등록을 하면 좋은 점

- 카드 결제기를 설치하여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.
- 학부모들이 연말에 요구하는 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다.

▶ 사업자 현황 신고 방법

면세 사업자인 홈스쿨은 매년 1월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한다. 이 신고를 근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매년 11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다.